

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302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15. 12. 16.(수)
발 의 자: 임 병 윤 의원 등
(박봉순 위원장)

□ 수정이유

- 동 조례의 개정에서 따라 다른 조례들에서 사용된 용어를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부칙 규정(다른 조례의 개정)에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제외된 조례를 포함하기 위함.

□ 수정주요내용

- 동 조례안 부칙 제3조에 명시된 2건의 조례 외에 4건의 조례를 추가함.
 - 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6조
 - ②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
 - ③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
 - ④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2조

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- ③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중 “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” 를 “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” 로 한다.
- ④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중 “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” 를 “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” 로 한다.
- 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” 를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” 로 한다.
- ⑥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 중 “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” 를 “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” 로 한다.

원회”를 “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”로 한다.